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관련 상법 개정안 검토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본조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합의나 약관은 무효가 됨
 -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방어 능력 등이 떨어지는 자들을 보험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이러한 자들도 사망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는 반론도 존재함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망보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최근 여러 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태풍 한남노로 숨진 미성년자가 상법상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금지 조항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됨
-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15세 미만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망보험 금지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인위적 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단체보험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절충적 방안임
 - 1건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모든 경우에 사망보장을 허용하나, 나머지 안들은 재해,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나 단체활동 중 보험사고의 경우로 한정함
- 사망보험에 연령 제한을 둘지 여부 및 어떤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할지 여부는 보험 접근 가능성에 대한 평등권, 행복추구권과 피보험자 보호 필요성을 이익 형량하여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항임
- 본건 개정안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15세 미만자 사망 시 유족이 단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과 관련된 사망보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단체보험도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보험 중에서도 어떤 경우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아울러, 예외 허용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최근 여러 건 발의되어 2023. 2. 13. 현재 총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임
 - 최근 개정안 발의는 태풍 힌남노로 숨진 14세 미성년자가 상법 제732조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됨¹⁾
-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²⁾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본조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합의나 약관은 무효가 됨³⁾
 - 이는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및 방어 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도덕적 위험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⁴⁾
- 이에 본고에서는 상법상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 금지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 및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고, 본건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 검토해보고자 함



2. 해외 입법례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관련) 개정 찬반론

가. 해외 주요국 입법례

- 독일은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에서 합의된 급부가 통상의 장례비용을 넘는 경우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음
 - 부모 중 1인이 7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도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합의된 급부가 통상 장례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녀의 동의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함(독일 보험계약법 제150조 제3항)

1)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제한에 대해 단체활동이 수반되는 수학여행 등에 사망보험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7년 국회에 같은 내용으로 상법개정안이 제출(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009111호)되었으나 회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2) 15세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공문서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함

3) 박세민(2007), 「현행 상법(보험편)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조』, 제613권, p. 30; 장덕조(2005),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상법 제732조」, 『아세아여성법학』, 제8호, p. 223

4) 김성태(2001), 『보험법강론』, 법문사, p. 326; 양승규(2004), 『제5판 보험법』, 삼지원, p. 463; 최기원(2002), 『제3판 보험법』, 박영사, p. 617; 박세민(2007), p. 31

- 프랑스는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고의인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벌금형에 처해짐(프랑스 보험법전 L132-3)
 -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계약은 허용되나 친권자 등의 승낙과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를 요함(L132-4)
- 일본은 피보험자의 연령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상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망보험을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사내규칙에 사망보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고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액 한도 기타 인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일본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7 제2항)
 -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이라도 부정한 이용이 발생할 우려가 적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유원지 등에서 불특정 입장자가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단체보험'이 포함됨⁵⁾
- 영미법은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생존에 이익(피보험이익)을 갖는 자만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는데, 피보험자의 생존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예가 있고, 널리 애정 기타의 이익을 포함하는 예도 있음
 - 미국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긴밀한 가족 관계를 기초로 하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고 여겨져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⁶⁾
 - 뉴욕주의 경우, 14세 6월 미만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은 5만 달러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유효한 생명보험 금액의 50%(4세 6월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25%) 중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함

나. 상법 제732조 개정 관련 찬반론

- 상법 제732조 개정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차별 해소 관점에서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부분의 삭제 내지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전개됨
 - 이하에서는 장애인 차별 해소 관점의 논의를 포함하여 15세 미만자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과 논거를 정리함
- 전면 삭제 내지 개정을 주장하는 가장 주된 논거는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사망보험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수단의 적절성, 비례성 등 구체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임⁷⁾

5) 그 밖에 규제에서 제외되는 보험에는 일시불 중신보험, 일시불 양로보험,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에 운용수익 등을 더한 금액 정도의 보험금을 피보험자 사망 시에 지급하는 개인연금보험이나 학자금보험이 있음(보험회사에 대한 종합감독지침 II-4-4-1-2. (9)㉠. (注))

6) 김두환(2019),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pp. 328-329

7) 임성택(2015), 「개정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 『법학평론』, 제5권, p. 144; 박세민(2006), 「보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 제5권, pp. 238-240; 김선광(2006), 「보험법상 장애인 차별에 관한 고찰」, 『민주법학』, 제30호, pp. 267-269

- 15세 미만자 등도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고,⁸⁾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례에서 보듯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사망보험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⁹⁾하고 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들을 양육하고 돌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함¹⁰⁾
 - 도덕적 위험은 잠재적인 것일 뿐 모든 15세 미만자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며,¹¹⁾ 일부 패륜적인 경우를 가지고 선량한 부모 등의 법정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함¹²⁾
- 나아가 상법 제732조가 방지하고자 하는 보험사기, 인위적 사고 등의 문제는 사기, 살인 관련 형법의 처벌규정,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법상의 여러 제도(보험금 지급 거절 등)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함¹³⁾
 - 주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연령 미만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례가 드물며¹⁴⁾ 보험금의 상한을 두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도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음
- 반면, 유지론은 상법 제732조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기방어가 곤란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¹⁵⁾으로서 헌법상 생명권은 평등권보다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¹⁶⁾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 보험은 재난에 대비하여 평소 누릴 수 있는 경제생활 정도의 확보가 중요 의의¹⁷⁾인데 15세 미만자는 법률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며 대개 피부양자 지위에 있는바¹⁸⁾ 유족의 경제생활상 위험 대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리적 고통은 별론으로 하고 유족 등이 입게 되는 환가 가능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장례비 정도인바, 15세 미만자를 사망보험 피보험자로 하도록 허용할 필요성보다 허용하는 경우 부정적 효과가 훨씬 심각함¹⁹⁾
- 또한 형사처벌 규정은 보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효과는 간접적일 뿐²⁰⁾이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15세 미만자를 인위적 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함²¹⁾
 - 주요국에서도 법적 구성은 다를지라도 자기방어가 어려운 연소자 등에 대한 사망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예가 많음²²⁾
 - 프랑스는 12세 미만자 등에 대한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고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형벌이 부과됨
 - 독일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장례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서면동의를

8) 박세민(2006), p. 235

9) 김두환(2019), p. 344

10) 송호신(2010), p. 155

11) 송호신(2010), p. 154; 김선광(2006), p. 268

12) 임성택(2015), pp. 148~149

13) 임성택(2015), pp. 142~143; 박세민(2006), p. 237

14) 김두환(2019), p. 344

15) 김선정(2007), 「상법 제732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78집, '07-12, p. 179~181; 장덕조(2005), pp. 228~229

16) 김선정(2007), pp. 179~181; 최병규(2007),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차별」,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pp. 328~329

17) 장덕조(2005), p. 235

18) 김선정(2007), p. 188; 박세민(2007), pp. 48~50; 장덕조(2005), p. 230

19) 장덕조(2005), p. 236; 박세민(2007), pp. 48~50

20) 김선정(2007), pp. 179~181; 장덕조(2005), pp. 228~229

21) 최병규(2007), p. 329

22) 김선정(2007), pp. 179~180

연도록 하며, 미국 뉴욕주는 14세 6월 미만자의 생명보험에 연령별 한도액을 두고 있음

- 일본은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보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액 한도 등 인수 관련 규정을 두게 함

○ 이처럼 견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2014년 상법 제732조를 유지하되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절충적 개정이 이루어짐

- 생각건대 경제활동 연령에 못 미치는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 허용보다 보호 필요성이 더 크고,²³⁾ 도덕적 위험 노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악용 가능성이 있는 한 피해의 심도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상실이 되므로 연령 제한을 전면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며, 이 문제는 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본건 상법 개정안 검토

○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상법 제732조의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장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으로 이들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마다 예외 허용 범위는 조금씩 다른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사망보장을 허용하는 안은 1건뿐이며, 나머지 안들은 재해,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로 한정함

〈표 1〉 상법 개정안 목록

번호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예외 허용 범위	진행 상황
1	2119025	김병욱 의원	2022. 12. 20.	학교·청소년단체 등이 실시하는 단체활동, 재난·감염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소관위접수
2	2117803	김정재 의원	2022. 10. 13.	천재지변,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소관위접수
3	2117787	백혜련 의원	2022. 10. 12.	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소관위접수
4	2117767	소병철 의원	2022. 10. 11.	제한 없음	소관위접수

○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하여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대개 고용주나 단체 대표자가 보험계약자가 됨)으로 (i) 구성원의 경제적 수요(구성원·유족의 생계비, 치료비 등)에 대한 대비와 (ii) 단체의 경제적 수요(구성원의 사고로 인한 단체의 사망, 퇴직, 상해, 질병 보상금 등)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함²⁴⁾

23)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생활의 불안 제거·경감이라는 보험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됨

24) 대법원은 단체보험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험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

- 단체보험은 단체사망, 단체생존, 단체생사혼합, 단체상해, 단체질병보험 등의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²⁵⁾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개별적 서면동의 요건을 원칙적으로 면제함
 - 이는 단체보험 활성화를 위해 편의성을 제고한 의미도 있으며,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달리 보험금 살인이나 도박보험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도 기반이 됨
- 다만, 구성원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고용주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등), 도덕적 위험이나 구성원의 인격권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²⁶⁾
 - 이에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본건 개정안은 기존의 전면 삭제론과 유지론에 대한 절충적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관해서는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체결되는 단체보험에서 규약을 갖추고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²⁷⁾
- 반면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이 단체보험에서 규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서면동의 받도록 한 것은 여전히 인위적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²⁸⁾이므로, 여전히 상법 제732조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함
 - 15세 미만자 등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인위적 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 검토컨대, 이러한 절충적 방안은 상법 제732조를 유지하면서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미성년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전면 삭제론에 비해 15세 미만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함

-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인위적 사고 등 위험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보험업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관련 규제 대상에서 부정 이용 우려가 적음을 이유로 '유원지 등에서 불특정 입장자가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단체보험 등'을 제외하고 있음
 - 연령에 관한 것은 아니나, 프랑스는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된 금치산자라도 일정한 단체보험 가입은 허용함²⁹⁾
 - 우리 법에서도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위험이 적다고 보아 서면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

○ 그렇다 하더라도 15세 미만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악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예외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소병철 의원안) 수익자나 보험사고에 제한 없이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면 예외를 허용함

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음

25) 한기정(2018), p. 775

26) 2014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됨(상법 제735조의3 제3항)

27) 임성택(2015), p. 147

28) 김선정(2007), p. 191

29) 프랑스는 금치산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지만(L132-3), 예외적으로 노동협약이나 기업협정의 집행으로 체결된 단체사망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음(L141-5)

- 15세 미만자에게 단체보험 사망보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단체의 경제적 수요에 대한 대비에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유족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로 예외 인정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백혜련·김정재·김병욱 의원안) 각 재해, 재난, 감염병, 단체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함
 - 백혜련 의원안은 '재해 등'으로 가장 범위가 넓고, 김정재 의원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보다 한정적이며, 김병욱 의원안은 '재난, 감염병 등' 외에도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생각건대, 예외 인정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 보상 가능성은 높아지나 피보험자의 위험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는바, 15세 미만자의 사망보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최소한의 지점이 어디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한편,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자 사망보장의 효력에 대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석·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허용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재해'에 제1급법정감염병이 포함되는지 여부³⁰⁾나 '재난'이 일상적인 용어로서 일반적 사고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을 가리키는지 여부, '감염병'은 일반적 독감까지 포함하는지³¹⁾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임



4. 결론

- 사망보험에 연령 제한을 두면서 어떤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 접근 가능성에 대한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과 보험범죄 예방 등 피보험자 보호 필요성을 이익 형량하여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항임
- 본건 개정안은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했음에도 연령을 이유로 지자체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일응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다만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망보험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 보험 중에서도 어떤 경우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예외 허용 범위는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0) 예컨대,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상품 약관상 재해는 제1급법정감염병을 포함하나, 손해보험상품에서 재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상해를 이를 포함하지 않음

31) 독감(인플루엔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법정감염병에 해당됨